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52회 정례회
2016. 12. 01.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경형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협의회 운영 기준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신설 (안 제2조)

나.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제2항제10호, 제14호, 제15호)

- 공군 제3710부대장 및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이 퇴임 등에 따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봄

다.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 세분화(안 제3조제3항)

- 기존 총무담당·비상기획담당간사, 심리전담당간사를 포함 작전담당간사, 정보담당간사, 경찰담당간사, 예비군담당간사, 소방담당간사 신설

라.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의2)

-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
-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,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,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마.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과한 사항 일부 개정(안 제4조)

바.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5조)

사.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[1)]

○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.

○ 안 제2조제1호부터 제5조까지는 각각 법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중복규정 하였고, 세부내용은 영 제8조제5항부터 제7항에 각각 규정된 내용을 중복규정 하였음.

---

1) 「통합방위법」은 '법'으로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은 '영'으로 표기함.

○ 안 제2조제6호는 영 제8조제6항제3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인 안 제2조제4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며, 제5호 다목과 제7호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3조제2항제10호 및 제14호는 영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함.

○ 안 제3조의2는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으며, 제3항제1호부터 제3호는 영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의 내용과 동일하며, 제4항도 영 제8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음.

○ 안 제5조는 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통제구역 설정기준이 명시되어 있고, 조례로 정하는 위임사항이 아님.

○ 안 제6조제1호는 영 제28조제1호부터 제5호의 내용과 동일하고, 제2호는 영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함.

○ 안 제7조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항이 아닌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임.

○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‘시행세칙’이 아닌 ‘운영세칙’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.

○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‘통합방위’란 적의 침투·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함으로, 현행 조례 제3조제4항 중 ‘재해재난’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나,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,

○ 상위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 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협의회 운영 기준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만, 검토내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소관부서와 신중하게 협의하여 의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